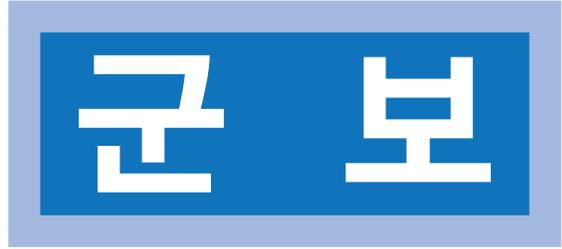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정기 제493 호 2022. 9. 1.(목)**

**훈 령**

장수군 훈령 제600호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2-875호      장수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  
 장수군 공고 제2022-895호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3  
 장수군 공고 제2022-907호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공 시**

장수군 고시 제 2022-116호      장수 군계획시설(주차장:장수중심지 주차타워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30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고시 제2022-1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장계 양천마을) ..... 131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고시 제2022-2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장수 식천마을) ..... 132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훈령 제600호

##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9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기본증명서 1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6조제3항 관련)

| 부서별      |                            | 합계      | 소계  | 행정<br>사무원 | 일반<br>실무원 | 기술<br>실무원 | 환경<br>미화원 | 도로<br>관리원 | 청<br>원<br>경<br>찰 | 정보<br>원<br>호<br>산<br>직<br>림<br>원 |   |
|----------|----------------------------|---------|-----|-----------|-----------|-----------|-----------|-----------|------------------|----------------------------------|---|
| 합 계      |                            | 303     | 274 | 71        | 66        | 98        | 32        | 7         | 24               | 5                                |   |
| 본청       | 소 계                        | 151     | 131 | 52        | 47        | 23        | 2         | 7         | 15               | 5                                |   |
|          | 기 획 조 정 실                  | 2       | 2   | 2         |           |           |           |           |                  |                                  |   |
|          | 행정지<br>정부                  | 행정지원과   | 30  | 26        | 16        | 8         | 2         |           |                  | 4                                |   |
|          |                            | 주민복지과   | 27  | 27        | 2         | 13        | 12        |           |                  |                                  |   |
|          |                            | 재무과     | 2   | 2         | 1         | 1         |           |           |                  |                                  |   |
|          |                            | 민원과     | 5   | 5         | 5         |           |           |           |                  |                                  |   |
|          |                            | 문화체육관광과 | 21  | 18        | 12        | 6         |           |           |                  | 3                                |   |
|          | 산업<br>건설                   | 환경위생과   | 13  | 12        | 3         | 4         | 3         | 2         |                  | 1                                |   |
|          |                            | 농업정책과   | 5   | 3         | 1         | 2         |           |           |                  | 2                                |   |
|          |                            | 일자리경제과  | 2   | 2         | 1         |           | 1         |           |                  |                                  |   |
|          |                            | 농축산유통과  | 1   | 1         | 1         |           |           |           |                  |                                  |   |
|          |                            | 축산과     | 2   | 2         | 2         |           |           |           |                  |                                  |   |
|          |                            | 산림과     | 25  | 16        |           | 11        | 5         |           |                  | 4                                | 5 |
|          | 안전재난과                      | 2       | 2   | 2         |           |           |           |           |                  |                                  |   |
|          | 건설교통과                      | 10      | 10  | 1         | 2         |           |           | 7         |                  |                                  |   |
| 의회       | 의 회 사 무 과                  | 4       | 3   | 3         |           |           |           |           | 1                |                                  |   |
| 직속<br>기관 | 소 계                        | 82      | 78  | 7         | 5         | 66        |           |           | 4                |                                  |   |
|          | 보<br>의<br>료<br>센<br>터      | 보건사업과   | 27  | 23        |           | 2         | 21        |           |                  | 4                                |   |
|          |                            | 의료지원과   | 22  | 22        | 1         | 1         | 20        |           |                  |                                  |   |
|          | 농<br>업<br>기<br>술<br>센<br>터 | 농촌지원과   | 22  | 22        | 4         |           | 18        |           |                  |                                  |   |
| 과수과      |                            | 11      | 11  | 2         | 2         | 7         |           |           |                  |                                  |   |
| 사업소      | 소 계                        | 26      | 21  | 2         | 9         | 9         | 1         |           | 5                |                                  |   |
|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 26      | 21  | 2         | 9         | 9         | 1         |           | 5                |                                  |   |
| 읍면       | 소 계                        | 44      | 44  | 10        | 5         |           | 29        |           |                  |                                  |   |
|          | 장 수 읍                      | 12      | 12  | 2         | 2         |           | 8         |           |                  |                                  |   |
|          | 산 서 면                      | 6       | 6   | 1         | 2         |           | 3         |           |                  |                                  |   |
|          | 번 암 면                      | 4       | 4   | 1         |           |           | 3         |           |                  |                                  |   |
|          | 장 계 면                      | 9       | 9   | 2         | 1         |           | 6         |           |                  |                                  |   |
|          | 천 천 면                      | 5       | 5   | 2         |           |           | 3         |           |                  |                                  |   |
|          | 계 남 면                      | 4       | 4   | 1         |           |           | 3         |           |                  |                                  |   |
| 계 북 면    | 4                          | 4       | 1   |           |           | 3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채용) ① ~ ⑤ (생략)</p> <p>⑥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2부</u></p> <p>5. (생략)</p> <p>6. <u>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u></p> <p>7. ~ 9. (생략)</p> <p>⑦ (생략)</p> | <p>제9조(채용)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기본증명서 1부</u></p> <p>5.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7. ~ 9.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

## [별표 1]

**현 행**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6조제3항 관련)**

| 부서별       |                            | 합계        | 소계  | 행정<br>사무원 | 일반<br>실무원 | 기술<br>실무원 | 환경<br>미화원 | 도로<br>관리원 | 총<br>원<br>경<br>찰 | 정보<br>원<br>호<br>산<br>직<br>령<br>원 |   |
|-----------|----------------------------|-----------|-----|-----------|-----------|-----------|-----------|-----------|------------------|----------------------------------|---|
| 합 계       |                            | 303       | 274 | 72        | 66        | 97        | 32        | 7         | 24               | 5                                |   |
| 본청        | 소 계                        | 151       | 131 | 53        | 45        | 24        | 2         | 7         | 15               | 5                                |   |
|           | 기 획 조 정 실                  | 2         | 2   | 2         |           |           |           |           |                  |                                  |   |
|           | 행<br>정<br>지<br>원<br>과      | 행 정 지 원 과 | 33  | 29        | 19        | 8         | 2         |           |                  | 4                                |   |
|           |                            | 주 민 복 지 과 | 26  | 26        | 2         | 11        | 13        |           |                  |                                  |   |
|           |                            | 재 무 과     | 2   | 2         | 1         | 1         |           |           |                  |                                  |   |
|           |                            | 민 원 과     | 5   | 5         | 5         |           |           |           |                  |                                  |   |
|           |                            | 문화체육관광과   | 19  | 16        | 10        | 6         |           |           |                  | 3                                |   |
|           |                            | 환경위생과     | 13  | 12        | 3         | 4         | 3         | 2         |                  | 1                                |   |
|           | 농<br>업<br>정<br>책<br>과      | 농 업 정 책 과 | 5   | 3         | 1         | 2         |           |           |                  | 2                                |   |
|           |                            | 일자리경제과    | 2   | 2         | 1         |           | 1         |           |                  |                                  |   |
|           |                            | 농축산유통과    | 1   | 1         | 1         |           |           |           |                  |                                  |   |
|           |                            | 축 산 과     | 2   | 2         | 2         |           |           |           |                  |                                  |   |
|           |                            | 산 림 과     | 25  | 16        |           | 11        | 5         |           |                  | 4                                | 5 |
|           |                            | 안 전 재 난 과 | 2   | 2         | 2         |           |           |           |                  |                                  |   |
| 건 설 교 통 과 | 10                         | 10        | 1   | 2         |           |           | 7         |           |                  |                                  |   |
| 의회        | 의 회 사 무 과                  | 4         | 3   | 3         |           |           |           |           | 1                |                                  |   |
| 직속<br>기관  | 소 계                        | 82        | 78  | 7         | 7         | 64        |           |           | 4                |                                  |   |
|           | 보<br>의<br>료<br>건<br>원      | 보 건 사 업 과 | 27  | 23        |           | 2         | 21        |           |                  | 4                                |   |
|           |                            | 의 료 지 원 과 | 22  | 22        | 1         | 1         | 20        |           |                  |                                  |   |
|           | 농<br>업<br>기<br>술<br>센<br>터 | 농 촌 지 원 과 | 22  | 22        | 4         |           | 18        |           |                  |                                  |   |
| 과 수 과     |                            | 11        | 11  | 2         | 4         | 5         |           |           |                  |                                  |   |
| 사업소       | 소 계                        | 26        | 21  | 2         | 9         | 9         | 1         |           | 5                |                                  |   |
|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 26        | 21  | 2         | 9         | 9         | 1         |           | 5                |                                  |   |
| 읍면        | 소 계                        | 44        | 44  | 10        | 5         |           | 29        |           |                  |                                  |   |
|           | 장 수 읍                      | 12        | 12  | 2         | 2         |           | 8         |           |                  |                                  |   |
|           | 산 서 면                      | 6         | 6   | 1         | 2         |           | 3         |           |                  |                                  |   |
|           | 번 암 면                      | 4         | 4   | 1         |           |           | 3         |           |                  |                                  |   |
|           | 장 계 면                      | 9         | 9   | 2         | 1         |           | 6         |           |                  |                                  |   |
|           | 천 천 면                      | 5         | 5   | 2         |           |           | 3         |           |                  |                                  |   |
|           | 계 남 면                      | 4         | 4   | 1         |           |           | 3         |           |                  |                                  |   |
| 계 북 면     | 4                          | 4         | 1   |           |           | 3         |           |           |                  |                                  |   |

## [별표 1]

### 개 정 안

####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6조제3항 관련)

| 부서별  |           | 합계      | 소계  | 행정<br>사무원 | 일반<br>사무원 | 기술<br>사무원 | 환경<br>미화원 | 도로<br>관리원 | 청<br>원<br>경<br>찰 | 정보<br>원<br>호<br>산<br>직<br>림<br>원 |   |
|------|-----------|---------|-----|-----------|-----------|-----------|-----------|-----------|------------------|----------------------------------|---|
| 합 계  |           | 303     | 274 | 71        | 66        | 98        | 32        | 7         | 24               | 5                                |   |
| 본청   | 소 계       | 151     | 131 | 52        | 47        | 23        | 2         | 7         | 15               | 5                                |   |
|      | 기 획 조 정 실 | 2       | 2   | 2         |           |           |           |           |                  |                                  |   |
|      | 행복지정국     | 행정지원과   | 30  | 26        | 16        | 8         | 2         |           |                  | 4                                |   |
|      |           | 주민복지과   | 27  | 27        | 2         | 13        | 12        |           |                  |                                  |   |
|      |           | 재무과     | 2   | 2         | 1         | 1         |           |           |                  |                                  |   |
|      |           | 민원과     | 5   | 5         | 5         |           |           |           |                  |                                  |   |
|      |           | 문화체육관광과 | 21  | 18        | 12        | 6         |           |           |                  | 3                                |   |
|      |           | 환경위생과   | 13  | 12        | 3         | 4         | 3         | 2         |                  | 1                                |   |
|      | 농건산업국     | 농업정책과   | 5   | 3         | 1         | 2         |           |           |                  | 2                                |   |
|      |           | 일자리경제과  | 2   | 2         | 1         |           | 1         |           |                  |                                  |   |
|      |           | 농축산유통과  | 1   | 1         | 1         |           |           |           |                  |                                  |   |
|      |           | 축산과     | 2   | 2         | 2         |           |           |           |                  |                                  |   |
|      |           | 산림과     | 25  | 16        |           | 11        | 5         |           |                  | 4                                | 5 |
|      |           | 안전재난과   | 2   | 2         | 2         |           |           |           |                  |                                  |   |
|      |           | 건설교통과   | 10  | 10        | 1         | 2         |           |           | 7                |                                  |   |
| 의회   | 의회사무과     | 4       | 3   | 3         |           |           |           |           | 1                |                                  |   |
| 직속기관 | 소 계       | 82      | 78  | 7         | 5         | 66        |           |           | 4                |                                  |   |
|      | 보건의료지원    | 보건사업과   | 27  | 23        |           | 2         | 21        |           |                  | 4                                |   |
|      |           | 의료지원과   | 22  | 22        | 1         | 1         | 20        |           |                  |                                  |   |
|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 22  | 22        | 4         |           | 18        |           |                  |                                  |   |
| 과수과  |           | 11      | 11  | 2         | 2         | 7         |           |           |                  |                                  |   |
| 사업소  | 소 계       | 26      | 21  | 2         | 9         | 9         | 1         |           | 5                |                                  |   |
|      | 시설관리사업소   | 26      | 21  | 2         | 9         | 9         | 1         |           | 5                |                                  |   |
| 읍면   | 소 계       | 44      | 44  | 10        | 5         |           | 29        |           |                  |                                  |   |
|      | 장수읍       | 12      | 12  | 2         | 2         |           | 8         |           |                  |                                  |   |
|      | 산서면       | 6       | 6   | 1         | 2         |           | 3         |           |                  |                                  |   |
|      | 번암면       | 4       | 4   | 1         |           |           | 3         |           |                  |                                  |   |
|      | 장계면       | 9       | 9   | 2         | 1         |           | 6         |           |                  |                                  |   |
|      | 천천면       | 5       | 5   | 2         |           |           | 3         |           |                  |                                  |   |
|      | 계남면       | 4       | 4   | 1         |           |           | 3         |           |                  |                                  |   |
| 계북면  | 4         | 4       | 1   |           |           | 3         |           |           |                  |                                  |   |

## 1. 개정이유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함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무원 근로자 채용 시 요구되었던 기본증명서(신원확인용)를 기본증명서로 하고, 신원진술서를 삭제
- 장수군 신규 시설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서 정원승인 요청 및 업무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한 직종변경에 따른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 2. 주요내용

-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를 기본증명서로 하며, 신원진술서 2부는 삭제(제9조)
- 부서별 정원 요구
  - 주민복지과 :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신규 개소에 따른 공무원 증원요청
  - 문화체육관광과 : 장수가야역사관 개관에 따른 공무원 증원요청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필수인력 공무원 증원요청
- 부서별 직종변경 요구
  - 과수과 : 수정별 인공증식센터 업무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한 공무원 직종변경에 따른 정원조정(직종전환  
(※ 일반실무원 2명 감 ⇒ 기술실무원 2명 증)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2-875호

## 장수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장 수 군 수

###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제정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 제정내용

-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할 경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사전심사: 법제 사전심사 및 규제사전심사(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성별영향분석평가(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입법예고: 2022. 8. 22. ~ 2022. 9. 10.(20일간)

####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건설교통과장)
  - 전자우편 및 팩스: [hwaniya99@korea.kr](mailto:hwaniya99@korea.kr), 063-350-571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시팀 350-2575에 문의바랍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 제정(안). 끝.

【붙임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 의 건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붙임 2】****장수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장수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협력할 의무

####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에 위탁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③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

료로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기증·공영자전거로 활용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22-895호

##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 장 수 군 수

####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수군수가 설치한 장수군 공설장례식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체반출, 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11조)

라. 위탁관리운영, 운영지원,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14조)

마.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안 제16조)

바.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 063-350-2111, 팩스 : 063-350-5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담당자 (전화 063-350-2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 의 견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장수군수가 설치한 공설장례식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란 안치실, 분향실, 접객실, 영결식장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3. “분향실”이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접객실”이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영결식장”이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6. “무연고 행려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장례식장은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1876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분향실(접객실 포함)
2. 안치실
3. 입관실 및 영결식장

4. 조리실
5. 사무실
6.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5조(관리운영)** ① 장례식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의업무에 한하여 장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체 발인일까지 장수군 금고에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
4. 무연고 행려사망자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체반출)** ① 사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체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사체 인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거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사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고 인계하여

야 한다.

**제11조(변상 등)** ① 장례식장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의 시설물(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등 손해를 끼치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운영)**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장례식장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전대·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장례식장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 구 분         |      | 시설명 | 분향실, 접객실,<br>조리실, 영결식장 등<br>(기본 제반시설) | 안치실<br>(1호기당) | 비 고 |
|-------------|------|-----|---------------------------------------|---------------|-----|
| 사용기준        |      |     | 1일                                    | 1일            |     |
| 사<br>용<br>료 | 소접객실 |     | 80,000 원                              | 40,000 원      | 1층  |
|             | 1접객실 |     | 160,000 원                             |               | 2층  |
|             | 2접객실 |     | 160,000 원                             |               | 2층  |

-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낮 12시에서 익일 12시  
까지를 1일로 산정하되, 6시간 이상은 1일 사용으로 간주한다.
-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LPG 가스료를 포함한다.

##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감 면 구 분   | 감면율(%) | 비 고 |
|---|--------|-----|
| 1호.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100    |     |
| 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50     |     |
| 3호.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100    |     |
| 4호. 무연고 행려사망자   | 100    |     |
| 5호.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 타 법령기준 |     |



[별지 제2호서식]

##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

|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사망장소  |
|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
| 허가내용  | 분향실  | 호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안치실  | 호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변 경   |      |    |          |       |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 사체 반출 신청서

|     |    |    |        |
|-----|----|----|--------|
| 담당자 | 팀장 | 과장 | 결<br>재 |
|     |    |    |        |

|                  |       |       |   |      |                       |
|------------------|-------|-------|---|------|-----------------------|
| 사망자 주소           |       |       |   |      |                       |
| 사망자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
| 반출 신청자           |       | 전화번호  |   | 안치번호 |                       |
| 안치실. 접객실<br>사용기간 | 년     | 월     | 일 | 시    | 부터<br>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시설 사용료           | 금 :   | 원 ( ₩ |   |      | 원)                    |
| 사용료 수납자          | 직 :   | 성 명 : |   | 인    |                       |
| 사체반출 확인자         | 장의사 : | 성 명 : |   | 인    |                       |

## 사체· 반출 승낙서

|        |  |      |  |     |      |
|--------|--|------|--|-----|------|
| 사망자 주소 |  |      |  |     |      |
| 사망자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
| 안치번호   |  |      |  |     |      |
| 반출신청자  |  | 관계   |  | 연락처 |      |

귀하가 신청한 상기 고인에 대하여 반출을 승낙하오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관계법령 발췌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

[본조신설 2015. 12. 29.]

###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2 - 907호

##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장 수 군 수

### 자치법규명

- 장수군 군계획조례

### 일부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 (안 제71조의 3)
-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부지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

- 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안 제62조)
- 다.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한 규정을 『국토계획법』 제79조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이 중복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31조제23호)
- 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로 적용함을 표기해 문구 해석에 따른 혼란 예방(안 별표24,27)
- 마. 상위법, 지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변경된 법률제명 정비

| 구분                   | 당초                     | 변경                   |
|----------------------|------------------------|----------------------|
| 제21조<br>제22조<br>제25조 | 영 별표1                  | 영 별표 1의2             |
| 제23조                 | 개발행위허가운영<br>지침 3-3-2-1 | 개발행위허가운영<br>지침 3-5-2 |

| 구분     | 당초                        | 변경                         |
|--------|---------------------------|----------------------------|
| 제52조   | 수질 및<br>수생태계 보전에<br>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 제59조   | 영 제84조4항                  | 영 제84조5항                   |
| 제61조의3 | 문화재보호법<br>제2조제2항<br>제3항   | 문화재보호법<br>제2조제3항<br>제4항제1호 |

- 바. 알기쉬운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 얻은            | 받은    | 절토    | 절토(땅깎기)    | 전면   | 앞면   |
| ~의 규정에<br>의하여 | ~에 따라 | 성토    | 성토(흙쌓기)    | 기타   | 그 밖에 |
| 한한다           | 한정한다  | 정지    | 정지(땅고르기)   | 날로부터 | 날부터  |
| 당해            | 해당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대하여는 | 대해서는 |
| 아니하다          | 않다    | 내측    | 안쪽         | 하여야  | 해야   |
| 이율            | 이자율   | 일조    | 별조임        |      |      |
| 전일            | 전날    | 구비서류  | 첨부서류       |      |      |

□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사전심사: 법제 사전심사 및 규제사전심사(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성별영향분석평가(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 입법예고: 2022. 8. 31. ~ 2022. 9. 19.(20일간)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건설교통과장)
- 전자우편 및 팩스 : [hwaniya99@korea.kr](mailto:hwaniya99@korea.kr), 063-350-57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시팀 350-2575에 문의바랍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별지서식) 1부.
  2.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3.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 의 견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붙임 2】****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위상)”을 “(군기본계획의 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로, “언은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를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라 한다)”를 “군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기본계획”을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으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 공청회)”를 “(군기본계획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을 “군수는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4일전 까지”를 “14일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안”을 “군기본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으로,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관리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관리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획시설계획 입안을”을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로, “위하여”를 “위해”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추가하여 계획

시설계획”을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리계획안”을 “군관리계획안”으로, “각호 및”을 “각 호 및”으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계획시설의 관리)”를 “(군계획시설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군계획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영 제2조 제2항 제1호”를 “영 제2조제2항제1호”로, “포함한다) :”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위생시설 :”을 “보건위생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역):”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을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으로, “소하천 :”을 “소하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율”을 “이자율”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을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41조 제5항”을 “영 제4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5조 앞에 “제3절 지구단위계획”을 삽입한다.

제15조의 제목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내”를 “도시지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16조 중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높 이기”를 “높이기”로, “조례시행 규칙”을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지구단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입안제안”을 “입안 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일”을 “전날”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하

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3조에 따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으로, “제 2항”을 “제2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지역 안”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절토·성토·정지”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로, “공업지역외”를 “공업지역 외”로,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외”를 “기반시설부담구역 외”로,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을 “않는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을 “형질변경[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지구단위계획외”를 “지구단위계획 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및 라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57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우려가 있을”을 “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련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그 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27”을 “별표 27”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50m 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250m 이내의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을 “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거리이상”을 “거리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식물관련시설로부터”를 “식물관련시설로부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재하여야”를 “식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미터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예방시설”을 “재해예방시설”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부지내”를 “사업부지 내”로, “송전선로 까지”를 “송전선로까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충분이 이격하여야”를 “충분히 이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내측”을 “안쪽”으로 한다.

5.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500m이내”를 “500m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조”를 “별쪼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다만)”을 “경우[다만]”으로, “분할하는”을 “분할한”으로, “함)”을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농공단지포함)내”를 “(농공단지포함) 내”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관계 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분할 :”을 각각 “분할:”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 제1항 각호”를 “제6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별표 1의2의 규정”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1 제2호 가목 (2)의 규정”을 “별표 1의2 제2호가목(2)”으로,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를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를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먹는 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으로,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제2호 나목”을 “별표 1의2 제2호나목”으로, “성토·절토”를 “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붙임”을 “않도록 옹벽·석축·폐붙임”으로,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를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 시행규

칙」 제25조”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성토를”을 “성토(흙쌓기)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6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형질변경 허가”를 “형질변경허가”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절토·성토”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로, “절개면에 대하여는”을 “절개면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5-2”로, “형질변경허가”를 “형질 변경허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 라목 (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을 “별표 1의2 제2호라목 (1)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녹지지역 :”을 “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 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2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을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업지역 :”을 “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석채취 :”를 “토석채취:”로, “3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제55조제1항 각호”를 “영 제5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를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를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

택(「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같은 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60조제1 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를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를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을 “계획관리지역의 산지 안”으로,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 :”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거지역 :”을 “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상업지역 :”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업지역 :”을 “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녹지지역 :”을 “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외지역 :”을 “도시 외지역:”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을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제한”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자연취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를 “건축물: 별표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를 “건축물: 별표 21”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삭제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제33조의 제목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을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별표 1제19호”를 “별표 1 제19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를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영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제4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중 “지역안에서 의”를 “지역에서의”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을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 안”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연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로, “용도지역 안”을 “용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화경관지구 :”를 “특화경관지구:”로, “20미터이하”를 “20미터 이하”로, “용도지역 안”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연여건”을 “자연여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를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을“(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주거지역 안”을 “주거지역”으로, “녹지지역안”을 “녹지지역”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6조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경관지구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로, “전면”을 “앞면”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제9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진흥지구안”을 “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범위안”을 “않는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주거지역 :”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다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으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제56조의 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을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를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준주거지역 :”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 :”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 :”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 :”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 :”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 :”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준공업지역 :”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 :”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 :”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 :”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15.10.27]”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을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로 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제58조제1호 중 “취락지구 :”를 “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하며, 같은 목 및 나목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을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공단지 :”를 “농공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업지역안”을 “공업지역”으로,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을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공업지역안”을 “공업지역”으로, “준산업단지 :”를 “준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로, “구역안”을 “구역”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화지구에서의 건폐

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의3의 제목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을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각목”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0조의4의 제목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재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61조 중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로,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2의 제목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60%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준주거지역 :”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 :”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 :”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 :”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 :”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 :”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준공업지역 :”을 “준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 :”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 :”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 :”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을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호의 범위안”을 “각 호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의”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영 제85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⑨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3조의 제목“(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을“(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개발진흥지구 :”를 “개발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을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공단지 :”를 “농공단지:”로,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을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을“(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으로, “대지안의 건축물이나”를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로,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을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 너비”를 “너비”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상업지역 안”을 “상업지역”으로, “당해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해당”을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으로, “당해 대지”를 “해당 대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자문을”을 “자문하여 그 의견을”로 한다.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이상이어야”를 “1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70조 제4항”을 “제70조제4항”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위 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5항 중 “제68조 제6항”을 “제68조제6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

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날로”를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0조의2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사항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행령 제57조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의2호”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71조의3제1항 중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를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제71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를 “제71조에 따른”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과의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를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13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영 제1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5조에 따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면심의 :”를 “대면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료검토 :”를 “자료검토:”로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계획상임기획단”을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6조에 따라”로, “계획상임기획단”을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및”을 “「지방공무원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

다.

제79조제1항 중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획상임기획단”을 “기획단”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8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6 마목(2)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8 다목 중 “근린생활시설(”를 “근린생활시설[”로, “너목”을 “너목(농기계 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자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동시행령 별표 1”을 “(같은 표”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 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30 | 금강 |  |
|----|----|--|

## [별표 24]

## 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제20조제1항제3호 관련)

| 읍면별 | 지역지구명                           | 표고(m)                | 비 고                 |
|-----|---------------------------------|----------------------|---------------------|
| 장수읍 | 도시지역                            |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 장수읍행정복지센터<br>415미터  |
|     |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br>외 비도시지역   | 행정복지센터 기준 150m       |                     |
|     | 덕산리                             | 행정복지센터 기준 200m       |                     |
|     | 대성리                             | 대성보건진료소 기준 73m       | 대성보건진료소 577미터       |
|     | 식천리                             | 식천마을회관 기준 90m        | 식천마을회관 520미터        |
|     | 수분리                             | 송계마을회관 기준 90m        | 송계마을회관 530미터        |
| 산서면 | 신창리,하월리,사상리                     | 면사무소기준 150m          | 산서면사무소 150미터        |
|     | 이룡리                             | 면사무소기준 150m          |                     |
|     | 오산리,동화리,학선리,백운리,<br>건지리,봉서리     | 면사무소기준 150m          |                     |
|     | 마하리,오성리,쌍계리,사계리                 | 면사무소기준 160m          |                     |
| 번암면 | 국포리,죽산리,죽림리,노단리,<br>대론리,논곡리,유정리 | 면사무소기준 150m          | 번암면사무소 248미터        |
|     | 교동리                             | 금천마을회관기준 95m         | 금천마을회관 375미터        |
|     | 지지리,사암리,동화리                     | 번암면사무소 기준 200m       | 번암면사무소 248미터        |
| 장계면 | 도시지역                            |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 장계면행정복지센터<br>357미터  |
|     | 금곡리,금덕리,무농리,삼봉리,<br>송천리,월강리,명덕리 | 행정복지센터 기준 200m       |                     |
|     | 오동리                             | 원오동회관 기준 83m         | 원오동회관 417미터         |
|     | 대곡리                             | 논개생가지관리사무소<br>기준 60m | 논개생가지관리사무소<br>528미터 |
| 천천면 | 봉덕리,삼고리,남양리,월곡리,<br>장판리,춘송리,비룡리 | 천천면사무소 기준 150m       | 천천면사무소343미터         |
|     | 연평리                             | 평지회관 기준 100m         | 평지회관 284미터          |
|     | 오봉리,용광리                         | 오봉보건진료소 기준<br>100m   | 오봉보건진료소 302미터       |
| 계남면 | 침곡리, 호덕리                        | 면사무소 기준 150m         | 계남면사무소 374미터        |
|     | 화양리,화음리,신전리                     | 면사무소 기준 110m         | 월장안마을회관 456미터       |
| 계북면 | 월현리,매계리,임평리                     | 면사무소 기준 57m          | 계북면사무소 473미터        |
|     | 원촌리                             | 면사무소 기준 127m         |                     |
|     | 농소리,어전리,양악리                     | 면사무소 기준 150m         |                     |

※ 위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와 비교한다.

[별표 25]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단,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중 별표26의 하천은 제외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4)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축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존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적용한다.
- 5)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건축물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 150m 이내의 건축물 포함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부터 22호까지, 25호, 26호, 28호는 제외)를 말한다.

[별표 27]

## 읍면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제20조의2 관련)

| 읍면별 | 지역지구명                                      | 표고(m)          | 비 고                |
|-----|--|----------------|--------------------|
| 장수읍 | 도시지역                                       | 행정복지센터 기준 30m  | 장수읍행정복지센터<br>415미터 |
|     |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br>외 비도시지역              | 행정복지센터 기준 60m  |                    |
|     | 덕산리  |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                    |
|     | 대성리, 식천리                                   | 대성보건진료소 기준 25m | 대성보건진료소 577미터      |
|     | 수분리  | 송계마을회관 기준 30m  | 송계마을회관 530미터       |
| 산서면 | 신창리, 하월리, 사상리                              | -              | 산서면사무소<br>150미터    |
|     | 봉서리, 사계리, 이룡리                              | 면사무소기준 30m     |                    |
|     | 오산리, 동화리, 학선리, 백운리, 마<br>하리, 건지리, 오성리, 쌍계리 | 면사무소기준 90m     |                    |
| 번암면 | 유정리, 국포리, 죽산리                              | 면사무소기준 80m     | 번암면사무소<br>248미터    |
|     | 죽림리, 노단리, 대룬리, 논곡리                         | 면사무소 기준 30m    |                    |
|     | 지지리, 사암리, 교동리, 동화리                         | 면사무소 기준 120m   |                    |
| 장계면 | 도시지역                                       | 행정복지센터 기준 20m  | 장계면행정복지센터<br>357미터 |
|     | 금곡리, 금덕리, 무농리, 삼봉리,<br>송천리                 | 행정복지센터 기준 43m  |                    |
|     | 오동리  | 행정복지센터 기준 80m  |                    |
|     | 명덕리  | 행정복지센터 기준 120m |                    |
|     | 대곡리  | 행정복지센터 기준 190m |                    |
| 천천면 | 춘송리  | 면사무소 기준 27m    | 천천면사무소 343미터       |
|     | 봉덕리, 삼고리, 남양리, 월곡리,<br>장판리                 | 면사무소 기준 47m    |                    |
|     | 비룡리  | 면사무소 기준 127m   |                    |
|     | 연평리  | 평지회관 기준 36m    | 평지회관<br>284미터      |
|     | 오봉리, 용광리                                   | 보건진료소 기준 40m   | 오봉보건진료소 302미터      |
| 계남면 | 침곡리, 호덕리                                   | 면사무소 기준 10m    | 계남면사무소<br>374미터    |
|     | 화양리, 화음리, 신전리                              | 면사무소 기준 60m    |                    |
|     | 궁양리, 가곡리, 장안리                              | 면사무소 기준 76m    |                    |
| 계북면 | 월현리, 매계리, 임평리                              | -              | 계북면사무소<br>473미터    |
|     | 원촌리  | 면사무소 기준 27m    |                    |
|     | 농소리, 어전리, 양악리                              | 면사무소 기준 37m    |                    |

※ 위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와 비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p>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p>   | <p>수” 라 한다)-----<br/>-----.</p>   |
| <p>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u>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③ <u>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u></p> <p>④ <u>제3항에 의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u></p> | <p>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u>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u><br/>-----<br/>-----.</p> <p>② --- <u>군기본계획</u>-----<br/>-----<br/>-----.</p> <p>③ <u>군기본계획</u>-----<br/>-----<br/><u>한정한다</u>----- <u>군계획위원회</u>-----<br/>-----</p> <p>④ ----- <u>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u> -----<br/><u>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u> -----<br/>-----.</p> |
| <p>제5조(<u>기본계획 공청회</u>) ① <u>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u></p>   | <p>제5조(<u>군기본계획 공청회</u>) ① <u>군수는 군</u>-----<br/>-----<br/>-----<br/>-----.</p>   |

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관리계획

제1절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② -----  
----- 14일전  
-----  
-----  
-----  
-----.

③ 군기본계획안-----  
-----  
-----  
-----  
-----.

④ ----- 군  
기본계획-----  
청취해야 -----.

⑤ -----  
-----  
군계획위원회-----  
-----  
-----  
-----.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  
-----  
-----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  
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  
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  
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  
으로 한다), 장수군 본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  
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  
여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  
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계획  
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  
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홈페  
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안에 반  
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 제22조제2  
항에 따른 -----  
-----  
-----  
-----  
----- 군관리계획 --  
----- 공고해야 -----.

② ---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  
----- 추가해 군계획시설계  
획 -----  
----- 통지해  
야 ----- . ----- 해  
당 ----- 않거-----  
-----  
----- 군  
홈페이지-----  
--.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 따라 -----  
----- 군관리계획안-----  
-----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

각 호 및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  
-----  
-----.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  
-----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  |  |
|--|--|
| <p><u>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u></p> <p>3. <u>획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u></p> <p>4. <u>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5. <u>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u></p> <p>6. <u>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u></p> <p>7. <u>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u> 다만, <u>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u></p> <p>8. <u>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u>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p> | <p>6. <u>삭제</u></p> <p>7. <u>삭제</u></p> <p>8. <u>삭제</u></p> <p>9. <u>삭제</u></p> <p>10. <u>삭제</u></p> |
|--|--|

을·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전문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절 계획시설

제10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과 영 제2조 제2항 제1호의 도로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 필요한  
-----  
-----  
- 군계획시설-----  
-----  
-----.

1. ----- 「농어촌도로 정비법」----- 영 제2조제2항제1호-----

|  |   |
|--|---|
| <p>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 담당부서</p>  | <p>----- 포<br/>합한다): -----</p>  |
| <p>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p>   | <p>2. ----- 보건위생시설: -----<br/>-----</p>   |
| <p>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 담당부서</p>  | <p>3. -----<br/>---(구역): -----</p>  |
| <p>4.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p>   | <p>4. 폐기물처리시설: -----<br/>-----</p>  |
| <p>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 담당부서</p>   | <p>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br/>-----</p>  |
| <p>6. (생략)</p> <p>제13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p> | <p>6. (현행과 같음)</p> <p>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br/>-----<br/>----- 이자율-----<br/>-----<br/>-----<br/>-----</p> |
| <p>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p>   | <p>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p>   |

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4. (생략)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신설>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도시지역 내 -----.

1. ~ 6. (현행과 같음)

|  |   |
|--|---|
| <p>7. <u>준공업지역안</u>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p>   | <p>7. <u>준공업지역</u>-----<br/>-----<br/>-----</p>   |
| <p>8. ~ 10. (생략)</p>   | <p>8. ~ 10. (현행과 같음)</p>  |
| <p>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u>지구단위계획</u>을 수립하고 <u>지구단위계획</u>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u>높이기</u>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u>조례시행규칙</u>으로 정할 수 있다.</p> | <p>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u>지구단위계획</u>을 수립하고 <u>지구단위계획</u>-----<br/><u>높이기</u> -----<br/>----- <u>조례시행규칙</u>-----.</p> |
| <p>제16조의2(<u>지구단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u>) ① (생략)</p>  | <p>제16조의2(<u>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u>) ① (현행과 같음)</p>   |
| <p>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 <p>② -----<br/>-----<br/>-----.</p>   |
| <p>1.·2. (생략)</p>  | <p>1.·2. (현행과 같음)</p>   |
| <p>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일(<u>입안 제안</u>의 경우 제안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p>   | <p>3. -----<br/>-----<u>입안 제안</u>-----<br/>-----<br/>-----<br/>-----</p>  |

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

-----.

③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전날-----

----- 각목-----

----- 사용해야 -----.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생략)

3. -----

가. -----  
----- 절토  
(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  
---- 공업지역 외-----  
----- 않  
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  
----- 기반  
시설부담구역 외-----  
-----  
-----  
않는 절토(땅깎기)·성토  
(흙쌓기)·정지(땅고르기)  
·포장 -----  
--- 해당 -----  
-----

다. -----  
-----  
----- 형질변  
경[절토(땅깎기) 및 성토  
(흙쌓기)는 제외한다]

라. (현행과 같음)

|  |  |
|--|--|
| <p>4. 토석채취<br/> 가. (생 략)<br/>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br/> 지역 및 <u>지구단위계획</u>의<br/>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br/>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br/>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br/> 토석채취</p> <p>5. 토지분할<br/> 가. (생 략)<br/>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br/>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br/> <u>당해</u> 토지의 분할<br/> 다. (생 략)<br/> 라. 토지의 일부가 <u>군계획시</u><br/> <u>설로 지형도면고시</u>가 된 <u>당</u><br/> <u>해</u> 토지의 분할<br/>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br/> 분할된 토지의 「<u>건축법</u>」<br/> <u>제57조 제1항</u>에 따른 분할<br/>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p> <p>6. (생 략)<br/>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br/>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br/>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br/> <u>여</u>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br/> 수 있다.</p> | <p>4. -----<br/> 가. (현행과 같음)<br/> 나. -----<br/> --- <u>지구단위계획</u> 외-----<br/> -----<br/> -----</p> <p>5. -----<br/> 가. (현행과 같음)<br/> 나. -----<br/> ----- <u>해당</u> -<br/> -----<br/> 다. (현행과 같음)<br/> 라. -----<br/> ----- <u>해당</u> -<br/> -----<br/> 마. -----<br/> ----- 「<u>건축법</u>」 제57<br/> <u>조제1항</u>-----<br/> -----</p> <p>6. (현행과 같음)<br/> 제18조(조건부 허가) -----<br/> <u>각 호의 어느 하나</u>-----<br/> ----- <u>제2항에 따라</u> -----<br/> -----.</p> |
|--|--|

|  |   |
|--|---|
| <p>1. (생 략)</p> <p>2. <u>당해</u>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 될 우려가 있을 때</p> <p>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u>우려가 있을 때</u></p> <p>4. (생 략)</p> <p>5. <u>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u>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때</p> <p>6. <u>그 밖</u>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u>단서의 규정에 의하여</u>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u>보전관리지역</u> : 3만제곱미터 미만</p> <p>2. <u>생산관리지역</u> : 3만제곱미터 미만</p> <p>3. <u>계획관리지역</u> : 3만제곱미터 미만</p> <p>4. <u>농림지역</u> : 3만제곱미터 미만</p> | <p>1. (현행과 같음)</p> <p>2. <u>해당</u> -----<br/>-----<br/>-----</p> <p>3. -----<br/>----- <u>있을</u><br/>-----</p> <p>4. (현행과 같음)</p> <p>5. <u>관련법령에 따라</u> -----<br/>-----</p> <p>6. <u>그 밖</u>-----<br/>-----</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br/>----- <u>단서에 따라</u> -----<br/>-----<br/>-----<br/>----- <u>각 호</u>-----</p> <p>-.</p> <p>1. <u>보전관리지역</u>: -----<br/>--</p> <p>2. <u>생산관리지역</u>: -----<br/>--</p> <p>3. <u>계획관리지역</u>: -----<br/>--</p> <p>4. <u>농림지역</u>: -----</p> |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에  
 따른다.

2.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 측정 방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  
 칩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  
 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0  
 도 이상인 토지 중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24의 지역별로 정한 표  
 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발전  
 시설은 별표27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다.

가.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별표 1의2 -----

-.  
 1. -----

1. -----  
 ----- 「산지관리법 시행  
령」 제20조제6항-----

-.  
 2. -----

2. -----  
 ----- 「산  
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3 ----- . -----

3. -----  
 ----- 별  
표 27----- . -----

-----  
 ----- .  
 -----

가. -----

|  |  |
|--|--|
| <p>지구 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로서 절개지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p> <p>나.·다. (생략)</p> <p>라. <u>농어촌도로정비법</u>, <u>사도법</u> 등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p> <p>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p> <p>① 발전시설 입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u>적합하여야</u> 한다.</p> <p>1. (생략)</p> <p>2. 5호 이상의 자연마을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u>아니하여야</u>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는 경우 가옥수에 2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u>거리이상</u>을 이격하되 최소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p> | <p>----- 250m 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p> <p>-----</p> <p>나.·다. (현행과 같음)</p> <p>라. 「<u>농어촌도로 정비법</u>」, 「<u>사도법</u>」-----</p> <p>-----</p> <p>② 제1항-----</p> <p>--- 따라 -----</p> <p>----- <u>않는다.</u></p> <p>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p> <p>① -----</p> <p>--- <u>적합해야</u>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않아야</u> -----</p> <p>-----</p> <p>--- <u>거리 이상</u>-----</p> <p>-----</p> |
|--|--|

3. (생 략)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을 받는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 7. (생 략)

②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경계울타리는 인접경계에서 1미터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3. (현행과 같음)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  
-----

가. -----  
-----  
-----  
----- 않을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식물관  
련시설로부터 -----  
----- 않을 -----

5. ~ 7. (현행과 같음)

② -----  
----- 적합해야 -----.

1. -----  
-----  
----- 식재해야 -----.

2. ----- 1  
미터 이상 -----  
-----

|   |  |
|---|--|
| <p>차폐막 설치를 해야 한다.</p> <p>3. (생 략)</p> <p>4. 발전시설 부지 내 배수처리 계획 시 토공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곳곳에 영구 침사지 등 <u>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5. <u>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6. 배전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u>사업부지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 까지</u> 지중화 하여야 한다.</p> <p>7. 전기변환장치인 인버터 설치 시 주변 가옥에서 <u>충분이 이격하여야</u> 하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 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p> <p>8. (생 략)</p> | <p>-----.</p> <p>3. (현행과 같음)</p> <p>4. -----<br/>-----<br/>-----<br/>----- <u>재해예방시설</u><br/>----- <u>설치해야</u> -----.</p> <p>5. <u>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u></p> <p>6. -----<br/>--- <u>사업부지 내</u> ----- <u>송전선로까지</u> ----- <u>해야</u> ---.</p> <p>7. -----<br/>----- <u>충분히 이격해야</u><br/>-----<br/>-----.</p> <p>8. (현행과 같음)</p> |
|---|--|

|   |   |
|---|---|
| <p>9.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u>적합하여야</u> 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옥상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p> <p>마. · 바. (생략)</p> <p>③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주변 <u>500m이내</u>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참석자명단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u>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p> <p>3.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3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p> | <p>9. -----<br/>-----<br/>----- <u>적합해야</u>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안쪽</u> -----<br/>-----<br/>-----</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③ -----<br/>-----<br/>-----<br/>----- <u>500m 이내</u> -----<br/>-----<br/>-----<br/>-----.</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br/>-----<br/>----- <u>별조임</u>-----<br/>-----</p> <p>3. -----<br/>-----</p> |
|---|---|

고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2년 이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경우 해당 마을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생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제20조의3(토지분할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  
 -----  
 -----  
 ----- 경우  
 [다만-----  
 ----- 분할한 -----  
 -----  
 -----  
 -----  
 -----  
 ----- 함]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농공단지포함) 내-----  
 -----

제20조의3(토지분할허가기준) ①  
 -----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  
 -----  
 -----  
 -----

|  |   |
|--|---|
| <p>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p> <p>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p> <p>② 토지분할 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p> <p>가. 매매토지의 <u>분할</u> : 토지매매계약서</p> <p>나. 공유토지의 <u>분할</u> : 각 지분자의 분할 동의서</p> <p>다. 증여의 <u>분할</u> : 증여계약서</p> <p>라. 교환의 <u>분할</u> : 교환계약서</p> <p>마. 판결의 <u>분할</u> : 판결문</p> <p>제20조의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군수는 법 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61조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p> | <p>-----</p> <p>1. <u>관계 법령</u>-----.</p> <p>-----</p> <p>-----.</p> <p>②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가. ----- <u>분할</u>: -----</p> <p>-----</p> <p>나. ----- <u>분할</u>: -----</p> <p>-----</p> <p>다. ---- <u>분할</u>: -----</p> <p>-----</p> <p>라. ---- <u>분할</u>: -----</p> <p>-----</p> <p>마. ---- <u>분할</u>: -----</p> <p>제20조의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p> <p>-----</p> <p>-----</p> <p>-----</p> <p>-----</p> <p>-----</p> |
|--|---|

|   |   |
|---|---|
| <p>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 행위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개최하여야</u> 한다.</p>   | <p>-----<br/>-----<br/>----- <u>개최해야</u> -----.</p>   |
| <p>② 협의회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u>61조 제1항 각호</u>의 내용을 말한다.</p>  | <p>② -----<br/>----- <u>제61조제1항 각 호</u>-----.</p>   |
| <p>제20조의5(협의회의 구성·운영)</p>   | <p>제20조의5(협의회의 구성·운영)</p>   |
| <p>① (생략)<br/>② 협의회는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 <u>구비서류의 적·부등</u>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관련 실·과·소의 처리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등을 협의 한다.</p>               | <p>① (현행과 같음)<br/>② -----<br/><u>첨부서류</u>-----<br/>-----<br/>-----<br/>-----<br/>-----.</p>   |
| <p>제20조의6(특정 건축물 등의 개발 행위 입지제한) ① 군수는 「<u>건축법 시행령</u>」 별표 1 제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22호(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u>별표 1의2의</u> 규정에 따라 개발행</p> | <p>제20조의6(특정 건축물 등의 개발 행위 입지제한) ① ----- 「<u>건축법 시행령</u>」 별표 1 -----<br/>-----<br/>-----<br/>-----<br/>----- <u>별표 1의2</u>-----<br/>-----.</p>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

-----  
 ----- 별표 1의2 제2호 가목(2)-----  
 -----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  
 ----- 않는 -----  
 -----  
 -----  
 -----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

1. -----  
 -----  
 -----  
 ----- 「먹는물관리법」 -----  
 -----  
 -----  
 -----  
 -----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

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3. -----  
-----  
농림지역-----  
----- 해  
당 지역-----  
-----  
-----  
-----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별표 1의2 제2호 나목-----  
----- 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 대해서-----  
----- 해야 -----.

- 1. -----  
-----  
----- 해야 -----.
- 2. ----- 않도록

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  
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  
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  
5조 에 따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생 략)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  
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  
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  
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  
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  
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생 략)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6미터 이상 생기는

옹벽·석축·떼붙임 -----  
해야 하고 -----  
----- 않도  
록 안전하게 해야 -----.

3. -----  
----- 「건  
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

4. ----- 성토(흙쌓  
기)를 -----  
-----  
----- 않도록 -----  
----- 해야 -----.

5. (현행과 같음)

6. -----  
-----  
-----  
----- 해야 -----  
-----  
-----.

7. (현행과 같음)

8. -----  
-----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6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산지에서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하여 적정폭(「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도로 적용)의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 . -----  
 -----  
 -----  
형질변경허가-- 「국가기술자격법」-----  
 -----  
 -----  
 -- 확보해야 ----- .

9.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절개면은-----  
 ----- .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5-2 -----  
 -----  
 -----  
 --- 형질 변경허가-----  
 -----

|  |   |
|--|---|
| <p>3.·4. (생략)</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u>별표1의2 제2호 라목 (1)의 규정</u>에 의하여 <u>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u>안에서 <u>관계법령</u>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u>아니하고</u>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녹지지역</u> : 200제곱미터 이상</li> <li>2. <u>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u> : 60제곱미터 이상</li> <li>3. <u>농림지역</u> : 60제곱미터 이상</li> <li>4. <u>자연환경보전지역</u> : 60제곱미터 이상</li> <li>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u>농어촌 정비법</u>」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u>농지법</u>」 제22조를 준용한다.</li> </ol> <p>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u>별표1 제2호 마목의 규정</u>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u>소음·악취</u> 등의 피해가</li> </ol> | <p>3.·4. (현행과 같음)</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br/> -- <u>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u>-----<br/> -----<br/> - <u>않고</u> -----<br/>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녹지지역</u>: -----</li> <li>2. <u>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u>: -----</li> <li>3. <u>농림지역</u>: -----</li> <li>4. <u>자연환경보전지역</u>: -----<br/> -----</li> <li>5. -----<br/> 「<u>농어촌정비법</u>」-----<br/> -----<br/> 「<u>농지법</u>」 제22조-----.</li> </ol> <p>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u>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u> -----<br/> -----<br/>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r/> -----</li> </ol> |
|--|---|

|  |  |
|--|--|
| <p>발생하지 <u>아니할</u> 것</p> <p>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u>아니할</u> 것</p> <p>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u>아니할</u> 것</p> <p>4.·5. (생략)</p> <p>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u>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u>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토지의 형질변경</p> <p>가. <u>주거지역·상업지역</u>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p> <p>나. <u>공업지역</u>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p> <p>2. <u>토석채취</u> : 부피 3만제곱미터 이상</p> <p>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p> | <p><u>않을</u> ---</p> <p>2. -----<br/>-----<br/>----- <u>않을</u> ---</p> <p>3. -----<br/>-----<br/>----- <u>않을</u> ----</p> <p>4.·5. (현행과 같음)</p> <p>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br/>----- <u>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u>-----<br/>-----<br/>-----<br/>-----<br/>-----.</p> <p>1. -----</p> <p>가. <u>주거지역·상업지역</u>: --<br/>-----</p> <p>나. <u>공업지역</u>: -----<br/>-----</p> <p>2. <u>토석채취</u>: --- 3만제곱미터 -----<br/><u>터</u> -----</p> <p>② -----<br/>-----<br/>-----<br/>-----</p> |
|--|--|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 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

----- 영 제55조제1항 각 호-----

-----  
-----  
-----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  |   |
|--|---|
| <p>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 <p>-----<br/>-----<br/>-</p>  |
|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br/>-----<br/>(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br/>-----<br/>-----</p>     |
|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br/>-----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br/>-----<br/>-----</p> |
|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br/>-----<br/>-----<br/>-----<br/>-----<br/>-----<br/>-----</p>         |
|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p>  |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br/>-----</p>   |

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생략)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  
 -----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  
 -----

10. (현행과 같음)

11. ----- 제9호까지-----  
 -----  
 -----  
 -----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  
 -----  
 --.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  
 -----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  
-----  
--.

② 제1항-----  
-----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안-----  
-----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  
----- 않도록 -----

③ -----  
-----  
----- 않거-----  
-----  
-----.

④ -----  
-----  
----- 않은 -----  
-----  
-----.  
-----.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
  - 가. 주거지역 : 0.1
  - 나. 상업지역 : 0.1
  - 다. 공업지역 : 0.1
  - 라. 녹지지역 : 0.2
- 2. 도시외지역 : 0.2

제30조의3(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설치) ①·② (생략)  
③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용지환산계수) -----  
-----  
-----.

- 1. 도시지역: -----  
-----
- 가. 주거지역: --
- 나. 상업지역: --
- 다. 공업지역: --
- 라. 녹지지역: --
- 2. 도시 외지역: -----  
-----

제30조의3(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해야  
-----.

제5장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 제12조제1항에 따라 -----  
----- 자연취락지구-----  
-----  
----- 각 호-----.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

|  |   |
|--|---|
| <p><u>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u></p>                 | <p><u>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u></p>                 |
| <p>2. <u>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u></p> | <p>2. <u>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u></p> |
| <p>3. <u>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u></p> | <p>3. <u>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u></p> |
| <p>4. <u>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u></p> | <p>4. <u>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u></p> |
| <p>5. <u>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u></p> | <p>5. <u>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u></p> |
| <p>6. <u>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u></p>     | <p>6. <u>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u></p>     |
| <p>7. <u>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u></p>    | <p>7. <u>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u></p>    |
| <p>8. <u>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u></p>    | <p>8. <u>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u></p>    |
| <p>9. <u>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u></p>    | <p>9. <u>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u></p>    |
| <p>10. <u>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u></p>       | <p>10. -----<br/> <u>-- 건축물: 별표 10</u></p>      |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 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21. -----  
----- 건축물: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삭 제>

제33조(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3. ~ 9. (현행과 같음)
10. -----별표 1 제19호-----  
-----

|   |  |
|---|--|
| <p>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에 <u>한한다</u>)</p>             | <p>-----<br/>-----<br/>-----<br/>----- <u>한정한다</u> -----<br/>-----</p>                   |
|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u>(주차장을 제외한다)</p>  | <p>11. -----<br/>- <u>자동차 관련 시설</u>-----<br/>-----</p>                                   |
|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21호의 동물 및 <u>식물관련시설</u>(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u>한한다</u>)</p>                 | <p>12. -----<br/>----- <u>식물 관련 시설</u>-----<br/>-----<br/><u>한정한다</u>-----<br/>-----</p> |
| <p>13. (생 략)</p>  | <p>13. (현행과 같음)</p>  |
|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 <p>14. -----<br/>- <u>묘지 관련 시설</u></p>   |
| <p>제35조((<u>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u>) 영 제72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 영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 <p>제35조(<u>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u>)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영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
| <p>1. (생 략)</p>   | <p>1. (현행과 같음)</p>   |
|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u>제2종근린생활시설</u> 중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p>                                   | <p>2. -----<br/><u>제2종 근린생활시설</u> -----<br/>-----</p>                                    |
| <p>3. ~ 8. (생 략)</p>  | <p>3. ~ 8. (현행과 같음)</p>  |
|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p>   | <p>9. -----</p>  |

|   |   |
|---|---|
| <p>8호의 창고시설로서 <u>당해</u>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p>  | <p>----- <u>해당</u> -----<br/>-----<br/>-----</p>  |
|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u>한한다</u>)</p>          | <p>10. -----<br/>-----<br/>-----<br/>-----<br/>-----<br/>-----<br/>----- <u>한정한다</u> -----<br/>-----</p>                      |
|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u>(주차장을 제외한다)</p>  | <p>11. -----<br/>- <u>자동차 관련 시설</u>-----<br/>-----</p>  |
|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u>식물관련시설</u>(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u>한한다</u>)</p>  | <p>12. -----<br/>----- <u>식물 관련 시설</u>-----<br/>-----<br/>----- <u>한정한다</u>-----<br/>-----</p>                                |
| <p>13. (생 략)</p>  | <p>13. (현행과 같음)</p>   |
|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u>묘지관련시설</u><br/>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u>영 제72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u>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 <p>14. -----<br/>- <u>묘지 관련 시설</u><br/>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u>영 제72조제1항에 따라</u>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u>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

|  |  |
|--|--|
| <p>1. ~ 3. (생략)</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u></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u>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u></p> <p>6. (생략)</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p>제39조(<u>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u>) 영 제72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u></p> <p>제40조(<u>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u>) 영 제72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u></p> | <p>1. ~ 3. (현행과 같음)</p> <p>4. -----<br/><u>자동차 관련 시설</u>-----<br/>-----</p> <p>5. -----<br/>----- <u>식물 관련 시설</u>-----<br/>-----<br/><u>한정한다</u>-----<br/>-----</p> <p>6. (현행과 같음)</p> <p>7. -----<br/><u>묘지 관련 시설</u></p> <p>제39조(<u>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u>) 영 제72조제2항에 <u>따라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u>-----<br/>-----<br/>-----<br/>-----<br/>-----<br/>-----<br/>----- <u>지</u><br/><u>역에서의</u> -----<br/>-----.</p> <p>제40조(<u>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u>) 영 제72조제2항에 <u>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u>-----</p> |
|--|--|

|  |   |
|--|---|
| <p><u>관지구 안에서</u>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u>군계획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u>지역 안에서</u>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p>  | <p>-----<br/>-----<br/>-----<br/>-----<br/>----- <u>지역</u> -----<br/>-----</p>  |
| <p>1. <u>자연경관지구</u> :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u>용도지역 안에서</u>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p>  | <p>1. <u>자연경관지구</u>: -----<br/>-----<br/>----- <u>용도지역</u> -----<br/>-----</p>  |
| <p>2. <u>특화경관지구</u> :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u>용도지역 안에서</u>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p>   | <p>2. <u>특화경관지구</u>: ----- 20미터 이하 -----<br/>----- <u>용도지역</u> -----<br/>-----</p>  |
| <p>제41조(<u>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u>)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u>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u>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u>자연여건</u>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p> | <p>제41조(<u>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u>) -----<br/><u>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u>-----<br/>-----<br/>-----<br/>----- <u>자연여건</u> -----<br/>-----<br/>----- <u>군계획위원회</u> -----<br/>-----</p>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리 하지 아니하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주거지역-----  
----- 녹지지역-----  
----- 확보해야 ----- . --- 「건축법」-----  
----- 않아도 -----  
-- 그렇지 않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  
-----  
-----  
-----  
-----  
-----  
-----.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  
-----  
-----  
-----.

② 경관지구-----  
-----  
-- 앞면-----.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2. ~ 8. (현행과 같음)
9. -----  
자동차 관련 시설-----  
-----
10. -----  
-----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1. (현행과 같음)
12. -----

|   |   |
|---|---|
| <p>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br/>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br/>당하는 건축물</p>  | <p>-----<br/>-----<br/>-</p>  |
| <p>가. (생 략)</p>   | <p>가. (현행과 같음)</p>  |
| <p>나. 감화원 <u>기타</u> 범죄자의 갱<br/>생·보육·교육·보건 등의<br/>용도에 쓰이는 시설</p>   | <p>나. ---- <u>그 밖에</u> -----<br/>-----<br/>-----</p>  |
|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br/>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 <p>13. -----<br/>- <u>묘지 관련 시설</u></p>  |
| <p>14. (생 략)</p>  | <p>14. (현행과 같음)</p>   |
| <p>제49조(<u>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br/>서의 건축제한</u>) 영 제76조제2호<br/>의 규정에 의하여 <u>중요시설물보<br/>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br/>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 <p>제49조(<u>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br/>의 건축제한</u>) 영 제76조제2호에<br/>따라 <u>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br/>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br/>할 수 없다.</u></p> |
| <p>1. ~ 8. (생 략)</p>  | <p>1. ~ 8. (현행과 같음)</p>   |
|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br/>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br/>·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br/>장을 제외한다)</u></p>                                    | <p>9. -----<br/><u>자동차 관련 시설</u>-----<br/>-----<br/>---</p>   |
|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br/>21호의 동물 및 <u>식물관련시설<br/>(축사·가축시설·도축장·<br/>도계장에 한한다)</u></p>                                   | <p>10. -----<br/>----- <u>식물 관련 시설(축<br/>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br/>장에 한정한다)</u></p>   |
| <p>11. (생 략)</p>  | <p>11. (현행과 같음)</p>   |
|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br/>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p>  | <p>12. -----<br/>-----</p>  |

|   |  |
|---|--|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생 략)</p> <p>나. 감화원 <u>기타</u>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p>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u>아니하는 범위안에서</u>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u>군계획</u>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u>계획위원회</u>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u>한한다</u>)</p> <p>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p> | <p>-----</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그 밖에</u> -----</p> <p>-----</p> <p>-----</p> <p>13. -----</p> <p>- <u>묘지 관련 시설</u></p> <p>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p> <p>-----</p> <p>-----</p> <p>-----</p> <p>-----</p> <p>-----</p> <p><u>않는 범위</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u>군계획위원회</u>-----</p> <p>-----<u>한정한다</u>-----</p> <p>-----</p> <p>② -----</p> <p>-----</p> |
|---|--|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다. (생략)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생략)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  
-----  
-----  
-----  
-----.

1. 계획관리지역: -----  
----- 않는 -----  
-----  
-----

가. -----  
「물환경보전법」 -----  
-----  
-----  
-----

나.·다. (현행과 같음)

2. -----  
-----  
----- 않는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  
 -----  
 -----  
 --- 군계획위원회-----  
 -----  
 -----.

제5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  
 -----  
 -----  
 -----  
 --.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일반주거지역: -----  
 -----.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가. 「건축법시행령」-----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나. 「건축법시행령」-----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 「건축법시행령」-----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라. 「건축법시행령」-----

|  |   |
|--|---|
| <p>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p> <p>2. <u>일반공업지역</u>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3. <u>계획관리지역</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p> | <p>-----</p> <p>--</p> <p>마. 「건축법 시행령」 -----<br/>----- 식물 관련 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br/>-----</p> <p>2. <u>일반공업지역</u>: -----<br/>----- . -----<br/>----- .</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p> <p>나. 「건축법 시행령」 -----<br/>-----<br/>-----</p> <p>다. 「건축법 시행령」 -----<br/>-----</p> <p>3. <u>계획관리지역</u>: -----<br/>-----</p> <p>가. 「건축법 시행령」 -----<br/>-----<br/>-----<br/>-----<br/>-----</p> |
|--|---|

|  |   |
|--|---|
| <p>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p> <p>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p> | <p>-----</p> <p>나. 「건축법 시행령」 -----</p> <p>-----</p> <p>다. 「건축법 시행령」 -----</p> <p>-----</p> <p>-----</p> <p>-----</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p> <p>-----</p> <p>-</p> <p>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p> <p>----- 해당 -----</p> <p>----- 별</p> <p>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종전용주거지역: -----</p> <p>-----</p> |
|--|---|

|                                |                                      |
|--------------------------------|--------------------------------------|
| 2. <u>제2종전용주거지역</u> : 50퍼센트 이하 | 2. <u>제2종전용주거지역</u> : -----<br>----- |
| 3. <u>제1종일반주거지역</u> : 60퍼센트 이하 | 3. <u>제1종일반주거지역</u> : -----<br>----- |
| 4. <u>제2종일반주거지역</u> : 60퍼센트 이하 | 4. <u>제2종일반주거지역</u> : -----<br>----- |
| 5. <u>제3종일반주거지역</u> : 50퍼센트 이하 | 5. <u>제3종일반주거지역</u> : -----<br>----- |
| 6. <u>준주거지역</u> : 70퍼센트 이하     | 6. <u>준주거지역</u> : -----              |
| 7. <u>중심상업지역</u> : 90퍼센트 이하    | 7. <u>중심상업지역</u> : -----<br>--       |
| 8. <u>일반상업지역</u> : 80퍼센트 이하    | 8. <u>일반상업지역</u> : -----<br>--       |
| 9. <u>근린상업지역</u> : 70퍼센트 이하    | 9. <u>근린상업지역</u> : -----<br>--       |
| 10. <u>유통상업지역</u> : 80퍼센트 이하   | 10. <u>유통상업지역</u> : -----<br>--      |
| 11. <u>전용공업지역</u> : 70퍼센트 이하   | 11. <u>전용공업지역</u> : -----<br>--      |
| 12. <u>일반공업지역</u> : 70퍼센트 이하   | 12. <u>일반공업지역</u> : -----<br>--      |
| 13. <u>준공업지역</u> : 70퍼센트 이하    | 13. <u>준공업지역</u> : -----             |
| 14. <u>보전녹지지역</u> : 20퍼센트 이하   | 14. <u>보전녹지지역</u> : -----<br>--      |
| 15. <u>생산녹지지역</u> : 20퍼센트 이하   | 15. <u>생산녹지지역</u> : -----<br>--      |

|   |  |
|---|--|
| <p>16. <u>자연녹지지역</u> : 20퍼센트 이하</p>   | <p>16. <u>자연녹지지역</u>: -----<br/>--</p>   |
| <p>17. <u>보전관리지역</u> : 20퍼센트 이하</p>   | <p>17. <u>보전관리지역</u>: -----<br/>--</p>   |
| <p>18. <u>생산관리지역</u> : 20퍼센트 이하</p>   | <p>18. <u>생산관리지역</u>: -----<br/>--</p>   |
| <p>19. <u>계획관리지역</u> : 40퍼센트 이하 <u>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15.10.27.]</u></p>              | <p>19. <u>계획관리지역</u>: ----- <u>이</u><br/><u>하</u></p>  |
| <p>20. <u>농림지역</u> : 20퍼센트 이하</p>   | <p>20. <u>농림지역</u>: -----</p>  |
| <p>21. <u>자연환경보전지역</u> : 20퍼센트 이하</p>   | <p>21. <u>자연환경보전지역</u>: -----<br/>-----</p>  |
| <p>제57조의2(<u>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u>) <u>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 <p>제57조의2(<u>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u>) 「<u>기업도시개발 특별법</u>」 제33조의2에 따라 <u>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
| <p>제58조(<u>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u>) <u>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 <p>제58조(<u>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u>) <u>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u></p>  |
| <p>1. <u>취락지구</u> : 60퍼센트 이하</p>  | <p>1. <u>취락지구</u>: -----</p>   |

|  |   |
|--|---|
| <p>2. 개발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과 같다.<br/> 가. <u>도시지역외</u>의 지역에 지정된 <u>경우</u> : 40퍼센트 이하<br/>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u>경우</u> : 30퍼센트 이하</p> <p>3. <u>수산자원보호구역</u> : 40퍼센트 이하</p> <p>4. 「자연공원법」에 따른 <u>자연공원</u> 및 <u>공원보호구역</u> : 60퍼센트 이하</p> <p>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u>농공단지</u> : 70퍼센트 이하</p> <p>6. <u>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u>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u>준산업단지</u> : 80퍼센트 이하</p> <p>7. <u>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u>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br/> 가. <u>계획관리지역</u> : 50퍼센트</p> | <p>2. -----<br/> --.<br/> 가. <u>도시지역 외</u>-----<br/> -- <u>경우</u>: -----<br/> 나. ----- <u>경우</u>: -----</p> <p>3. <u>수산자원보호구역</u>: -----<br/> --</p> <p>4. ----- <u>자연공원</u>: -----<br/> --</p> <p>5. -----<br/> ----- <u>농공단지</u>: -----</p> <p>6. <u>공업지역</u>--- <u>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u>-----<br/> -----<br/> -----<br/> ----- <u>준산업단지</u>: -----</p> <p>7. -----<br/> ----- <u>성장관리계획</u> -<br/> -----<br/> -----.<br/> 가. <u>계획관리지역</u>: -----</p> |
|--|---|

|   |  |
|---|--|
| <p>이하</p> <p>나. <u>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u> : 30퍼센트 이하</p> <p>제59조(건폐율의 강화) <u>영 제84조 제4항의 규정</u>에 의하여 <u>군수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u>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u>정한 구역안</u>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p> <p>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u>에 의하여 <u>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u>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60조의2(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규정</u>에 의하여 <u>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u></p> | <p>---</p> <p>나. ----- <u>생산관리지역</u>: -----</p> <p>제59조(건폐율의 강화) <u>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u> -----</p> <p>-----</p> <p>-----</p> <p>-----</p> <p>----- <u>구역</u>-----</p> <p>-----</p> <p>-----</p> <p>-----</p> <p>제60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u> -----</p> <p>-----</p> <p>-----</p> <p>-----</p> <p>-----</p> <p>-----</p> <p>제60조의2(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u> -----</p> <p>-----</p> <p>-----</p> <p>-----</p> <p>-----</p> |
|---|--|

경우로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의3(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  
-----  
-----  
-----.

제60조의3(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  
-----  
-----  
-----  
-----  
-----  
-----  
-----  
-----  
-----

② -----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  
----- 각 호 -----  
-----  
-----.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돌

<신 설>

③ (생 략)

제60조의4(방재지구안에서의 건 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 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 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 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 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

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 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 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 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 설의 증축일 것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4(방재지구에서의 건폐 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 호에 따라 -----

-----  
-----  
-----  
-----  
-----  
-----  
-----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 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  |   |
|--|---|
| <p><u>역안에서 농지법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 <p><u>「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br/>-----.</u></p>  |
| <p><u>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 <p><u>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br/>-----<br/>-----<br/>-----.</u></p>                           |
| <p><u>제61조의3(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 <p><u>제61조의3(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br/>-----<br/>-----<br/>-----<br/>-----.</u></p> |
| <p><u>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u></p> <p><u>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u></p>  | <p><u>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u></p> <p><u>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br/>--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u></p>       |

| <u>화재</u>   | <u>록문화재</u>   |
|---|---|
|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br>6호에 따른 한옥  |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br>6호에 따른 한옥   |
| 제61조의4(생산농지지역에서의<br>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br>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의<br>규정에 의하여 생산농지지역에<br>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br>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br>한다. | 제61조의4(생산농지지역에서의<br>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br>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br>따라 -----<br>-----<br>----- 60퍼센트 이하-----<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br>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br>설(전라북도 내 시·군에서<br>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br>통시설만 해당한다) ,                               |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br>7항제2호-----<br>-----<br>-----  |
|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br>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br>의하 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br>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br>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br>-----<br>각 호-----.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br>센트 이하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br>-----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br>센트 이하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br>-----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br>센트 이하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br>-----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
| 센트 이하                           | -----                       |
| 5. <u>제3종일반주거지역</u> : 300퍼센트 이하 | 5. <u>제3종일반주거지역</u> : ----- |
| 6. <u>준주거지역</u> : 500퍼센트 이하     | 6. <u>준주거지역</u> : -----     |
| 7. <u>중심상업지역</u> : 1천500퍼센트 이하  | 7. <u>중심상업지역</u> : -----    |
| 8. <u>일반상업지역</u> : 1천300퍼센트 이하  | 8. <u>일반상업지역</u> : -----    |
| 9. <u>근린상업지역</u> : 900퍼센트 이하    | 9. <u>근린상업지역</u> : -----    |
| 10. <u>유통상업지역</u> : 1천100퍼센트 이하 | 10. <u>유통상업지역</u> : -----   |
| 11. <u>전용공업지역</u> : 300퍼센트 이하   | 11. <u>전용공업지역</u> : -----   |
| 12. <u>일반공업지역</u> : 350퍼센트 이하   | 12. <u>일반공업지역</u> : -----   |
| 13. <u>준공업지역</u> : 400퍼센트 이하    | 13. <u>준공업지역</u> : -----    |
| 14. <u>보전녹지지역</u> : 80퍼센트 이하    | 14. <u>보전녹지지역</u> : -----   |
| 15. <u>생산녹지지역</u> : 100퍼센트 이하   | 15. <u>생산녹지지역</u> : -----   |
| 16. <u>자연녹지지역</u> : 100퍼센트 이하   | 16. <u>자연녹지지역</u> : -----   |
| 17. <u>보전관리지역</u> : 80퍼센트 이하    | 17. <u>보전관리지역</u> : -----   |

|  |   |
|--|---|
| <p>18. <u>생산관리지역</u> : 80퍼센트 이하</p> <p>19. <u>계획관리지역</u> : 100퍼센트 이하 다만, <u>성장관리방안</u>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2015.10.27.]</p> <p>20. <u>농림지역</u> : 80퍼센트 이하</p> <p>21. <u>자연환경보전지역</u> : 80퍼센트 이하</p> <p>② 제1항의 <u>규정</u>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u>자연환경보전지역</u>안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u>각호의 범위</u>안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u>임대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u>에 한정한다)과 <u>기숙사의 경우</u>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 <p>18. <u>생산관리지역</u>: -----<br/>--</p> <p>19. <u>계획관리지역</u>: -----<br/>----- <u>성장관리계획</u>-----<br/>-----<br/>-----</p> <p>20. <u>농림지역</u>: -----</p> <p>21. <u>자연환경보전지역</u>: -----<br/>-----</p> <p>② 제1항-----<br/>----- <u>자연환경보전지역</u>-----<br/>----- <u>각 호의 범위</u>-----<br/>-----.</p> <p>③ -----<br/>-----<br/>----- <u>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u>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br/>-----<br/>-----.</p>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생략)

⑤ (생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신설>

④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제1항 -----  
-----  
-----.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

<신 설>

<신 설>

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⑨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

|   |   |
|---|---|
| <p>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u>개발진흥지구</u> : 100퍼센트 이하</li> <li>2. <u>수산자원보호구역</u> : 80퍼센트 이하</li> <li>3. 「자연공원법」에 <u>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u> : 100퍼센트</li> <li>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의 따른 <u>농공단지</u>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li> </ol> <p>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u>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u></p> | <p>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p> <p>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br/>-----<br/>-----<br/>-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지역 외----- <u>개발진흥지구</u>: -----</li> <li>2. <u>수산자원보호구역</u>: -----<br/>--</li> <li>3. ----- <u>따른 자연공원</u>: -----</li> <li>4. -----<br/>----- <u>농공단지</u>: ----- <u>도시지역 외</u>-----<br/>---- <u>한정한다</u>-----<br/>-----</li> </ol> <p>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br/>----- <u>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u></p> |
|---|---|

|  |   |
|--|---|
| <p><u>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u><br/>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br/>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br/>·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br/>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br/>제1항 <u>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u><br/><u>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u><br/><u>다.</u></p>               | <p><u>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u>-----<br/>-----<br/>-----<br/>----- <u>각 호에 따른</u> ---<br/>-----<br/>-----.</p>   |
| <p>1. <u>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u><br/><u>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u><br/><u>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u><br/><u>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u><br/><u>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u><br/><u>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u><br/><u>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u><br/><u>건축물</u></p> | <p>1. -----(<u>교통광장을 제외</u><br/><u>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u>---<br/>-----<br/>----- <u>대지 안의 건축</u><br/><u>물이나</u> -----<br/>-----<br/><u>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u></p> |
| <p>2. <u>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u><br/><u>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u><br/><u>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u><br/><u>이상인 건축물</u></p>  | <p>2. <u>너비</u> -----<br/>-----<br/>-----<br/>---</p>   |
| <p>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br/>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br/>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br/>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u>주택</u><br/><u>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u><br/><u>업 및 주택재건축사업</u>을 시행하<br/>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u>상업지</u></p>                           | <p>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br/>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br/>-----<br/>----- <u>재개발사업</u><br/><u>및 재건축사업</u>-----<br/>-----<br/>--- <u>상업지역</u>-----</p>               |

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a)/(1-a)]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여기서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적허용) 영 제93조제6항에 따

해당 건축물-----  
-----  
-----  
----- 제62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해당 -----  
-----  
-- 해당 대지-----  
----- . -----  
-----  
-----  
--- 각 호에 따른 -----  
-----  
----- .

② 제1항-----  
-----  
----- 영 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  
-----  
-----  
----- 않는다.

제66조(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적허용) -----

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호 자목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 4. (생략)

제68조(구성) ① ~ ③ (생략)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 3. (생략)
- ⑤ (생략)
-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각 호 -----  
-----  
-----.

제67조(기능) -----  
-----  
-----.

1. -----  
----- 자문하여  
그 의견을 -----  
--
2. ~ 4. (현행과 같음)

제6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 . -  
-----  
----- 1 이상이  
어야 ---.

1. ~ 3.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⑥ -----  
-----

|  |   |
|--|---|
| <p>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 <p>-----<br/>-----.</p>   |
| <p>1. · 2. (생략)</p>  | <p>1. · 2. (현행과 같음)</p>   |
| <p>3. 제70조 제4항 위원회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u>안</u> <u>니하여</u>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p>         | <p>3. 제70조제4항 -----<br/>-----<br/>----- <u>않아</u> -----<br/>-----</p>                 |
| <p>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u>제출하여야</u> 한다.</p>   | <p>⑦ -----<br/>----- <u>제출해</u><br/><u>야</u> ----.</p>                                |
| <p>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u>위원회</u>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 <p>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br/>-----<br/><u>위원회</u>-----<br/>--.</p>                    |
| <p>② · ③ (생략)</p>  |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제70조(회의운영) ① ~ ④ (생략)</p>   | <p>제70조(회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
| <p>⑤ 위원이 제6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 <p>⑤ --- <u>제68조제6항</u>-----<br/>-----<br/>-----<br/>-----<br/><u>통보해야</u> -----.</p> |
| <p>⑥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u>날로부터</u> 30일 이내에</p>   | <p>⑥ -----<br/>- <u>날</u>-----</p>  |

|  |   |
|--|---|
| <p>완료하고,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보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u>아니한다</u>.</p> | <p>-----<br/>-----<br/>-----<br/>-----<br/>----- . -----<br/>----- <u>관계 기관</u> -----<br/>----- <u>않는다</u>. -----</p> |
| <p>제70조의2(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p>   | <p>제70조의2(심의 의결방법) -----<br/>----- .</p>  |
| <p>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u>아니하고</u>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p>  | <p>1. -----<br/>-----<br/>-- <u>않고</u> -----<br/>-----</p>  |
| <p>2. ~ 5. (생략)</p>  | <p>2. ~ 5. (현행과 같음)</p>   |
| <p>제71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p>   | <p>제71조(분과위원회) ① -----<br/>-----<br/>-----<br/>----- .</p>  |
| <p>1. ~ 4. (생략)</p>  | <p>1. ~ 4. (현행과 같음)</p>   |
| <p>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p>   | <p>5. -----<br/>-----</p>   |

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  
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  
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  
다.

<신 설>

③·④ (생 략)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  
 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  
 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  
 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령 제57조제1의2호의 행위  
 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1조의3(공동위원회) ①법 제3  
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보고해야 -----.

⑥ -----  
 -----  
 ----- 영 제57조  
제1의2호-----  
 -----  
 -----.

제71조의3(공동위원회) ① 법 제3  
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구단위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장수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71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생략)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략)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

② ----- 30명 -----  
----- 제71조에 따른 -----  
-----  
-----  
1 이상-----.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서의 장-----  
----- 팀장이 ----.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응해야 -----.

제73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p>주민이 제안한 <u>군관리계획안</u>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p>   | <p>-----<br/>-----<br/>-----<br/>-----<br/>----- <u>통보</u>해야 -----<br/>-----.</p>   |
| <p>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u>당해</u>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br/>-----<br/>-----<br/>----- <u>해당</u> -----<br/>-----.</p>   |
| <p>제75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u>보고</u>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u>영 제113조의3 제1항</u>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위원회심의 종결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p> | <p>제75조(회의록) ① -----<br/>-----<br/><u>보고</u>하고, 이를 보관해야 -----<br/>-----.</p> <p>② <u>영 제113조의3제1항</u>-----<br/>-----<br/>-----<br/>-----.</p> |
| <p>제76조(수당 및 여비 등) <u>영 제115조의 규정</u>에 의하여 장수군 공</p>  | <p>제76조(수당 및 여비 등) <u>영 제115조에 따라</u> -----</p>   |

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대면심의 :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 2. 서면심의 및 자료검토 : 1회당 100,000원
- 3. (생략)

제2절 계획상임기획단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3. (생략)
- ③ (생략)
-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 1. 대면심의: -----
- 2. ----- 자료검토: -----
- 3. (현행과 같음)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

----- 군계획상임기획단-----

-.

②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 「지방공무원법」 및 -----

|   |   |
|---|---|
| <p>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 <p>----- . -----<br/>-----<br/>-----<br/>-----<br/>- .</p>                                  |
| <p>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p>  | <p>⑤ ----- 범위-----<br/>----- .</p>  |
| <p>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u>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br/>-----<br/>----- 「<u>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br/>----- .</p> |
| <p>②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p>② <u>기획단</u>-----<br/>----- <u>대해</u><br/><u>서는 예산의 범위</u>-----<br/>----- .</p>          |
| <p>제80조(자료·설명요청) ① (생략)</p>   | <p>제80조(자료·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p>   |
| <p>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 <p>② -----<br/>-----<br/>----- <u>응해야</u> ---- .</p>  |
| <p>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82조(시행규칙) -----<br/>- <u>필요한</u> -----<br/>----- .</p>                                  |

장수군 고시 제2022 - 116호

## 장수 군계획시설(주차장 : 장수중심지 주차타워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장수 군계획시설(주차장:장수중심지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장 수 군 수

### □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1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차타워 건립사업
  - 명 칭 : 장수중심지 주차타워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1,886.35㎡
  - 건축면적 : 1,522.45㎡, 연면적 : 4,164.21㎡ (철골조)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024.12.31.
6. 관계도서 : 실음생략 (장수군 건설교통과(063-350-2578) 비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
|    |         |        |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 1  | 장수읍 장수리 | 216-5  | 잡  | 2,097 | 1,883.45 | 장수군 |    |
|    |         | 216-12 | 도  | 172   | 2.90     | 장수군 |    |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고시 제2022 - 1호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장 수 군 수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주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나. 성 명 : 장수군수(시설관리사업소장)

### 2. 사업시행의 목적

장계면 오동리 양천(저실)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확충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일원

나. 면 적 : 7,000㎡

### 4. 시설의 종류·명칭 및 규모

가. 종 류 : 분류식 하수(오수)관로

나. 명 칭 : 장계 양천(저실)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다. 규 모 : 오수관로(D50mm~D200mm) L=3,098m, 배수설비 11가구, 맨홀펌프장 1개소

###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장계 하수처리구역

### 6. 사업시행기간 : 2022. 07. ~ 2023. 07.

###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팀에서 열람(☎ 063-350-2902)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고시 제2022 - 2호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장 수 군 수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주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나. 성 명 : 장수군수(시설관리사업소장)

### 2. 사업시행의 목적

장수읍 식천리 식천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확충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일원

나. 면 적 : 23,000㎡

### 4. 시설의 종류·명칭 및 규모

가. 종 류 : 분류식 하수(오수)관로

나. 명 칭 : 식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다. 규 모 : 오수관로(D150mm~D200mm) L= 3.15km, 오수가압관로(D100mm)  
L=1.127km, 배수설비 51가구, 오수펌프장 1개소

###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구암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 6. 사업시행기간 : 2022. 07. ~ 2023. 12.

###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팀에서 열람(☎ 063-350-2901)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